

—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년 2월 6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1년 2월 6일

라. 상정일자 : 2001년 2월 12일

제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기획실장 이 용 태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지역정보화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.

다. 주요내용

- 시장은 전년도 지역정보화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(제5조) → 매년 12월말까지로
-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 신설(제10조)
-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위원 수당지급 규정(제14조)
- 지역정보화 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운영기능 추가(제16조제8호)

라. 참고사항

- 경상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 개정 권고안
- 경상북도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권고안을 토대로 개정하는 내용인 제5조(추진실적 및 익년도 계획보고)와 제16조(지역정보화 본부의 기능)을 보완하는 내용과 지역정보화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0조④항에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14조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.
- 제10조④항은 당초 조례 취지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항이라 사료되며
-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촉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 다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단서 규정으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